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2007. 5. 22.

행 정 위 원 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5월4일 영등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7년 5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2007.5.18)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홍 성배)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시달되어, 새로이 개정된 역모기지론 관련 감면 규정 조문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역모기지 실시주택 재산세 감면규정 신설 (안 제4조의2)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따라 주택 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3. 専門委員の 検討報告 要旨 (전문위원 김완섭)

-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 등의 사회문제 해소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소유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경감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임.
-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 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므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함이 없이 타당함.

4. 審査結果：原案 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0
----------	----

제출연월일 : 2007. 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개정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이 서울특별시로 부터 이첩·시달되어, 새로이 개정된 역모기지론 관련 감면규정 조문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역모기지 실시주택 재산세 감면규정 신설 (안 제4조의2)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3조
 - 서울특별시 세제과-12915(2006.11.1) 및 세제과 -2327(2007. 2. 21) 구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 공문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입법예고(2007.3.8 ~ 2007.3.28)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 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조와 조 제목은 각각 붙여 쓰고,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각각 띄어 쓴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4조의 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u> <u>「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3의</u> <u>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u> <u>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u> <u>(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u> <u>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u> <u>제9조제2항제4호의 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u> <u>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u> <u>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u> <u>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u> <u>경감한다.</u>